

##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인 정보 확인 강화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 2026. 1. 22.부터 시행됩니다(테러자금금지법 부칙 제1조, 2025. 1. 21. 개정 및 공포).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과 동일하게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등과의 금융거래등도 제한되므로(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4항), 금융회사가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으로 인하여 고객이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배경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 받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i)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법인·단체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1항), (ii)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범위에 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4항) 테러관련자의 자산동결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테러자금금지법 2024. 12. 정무위원회 의결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개정 테러자금금지법으로 인한 주요 쟁점

개정 테러자금금지법에 의하면, 금융감독당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법인·단체 외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법인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테러자금금지법 수범대상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문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금융회사는 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 외 지정

### Related Areas

금융규제

### Contact

**이광진** 변호사

02-528-6456

kwangjinlee@yulchon.com

**김시목** 변호사

02-528-5764

smkim@yulchon.com

**윤필상** 변호사

02-528-6441

psyoon@yulchon.com

**장재완** 변호사

02-528-6172

jwjang@yulcon.com

**이태호** 외국변호사

02-528-5476

thlee@yulchon.com

**이호재** 수석 전문위원

02-528-6467

hojaelee@yulchon.com

**추민수** 수석 전문위원

02-528-5376

mschoo@yulchon.com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인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와의 금융거래도 제한되므로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을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식별하여야 하는지가 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법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는 개인·법인·단체가 지정될 수 있으나(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1항),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는 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어(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4항), 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와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 테러자금금지법 문언상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범위에는 법인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나. 직·간접 소유 법인의 범위 판단 방법

테러자금금지법은 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소유하는 법인을 대량무기획산등 관련 개인·법인·단체등(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량살상무기획산등 관련 개인·법인·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의미)이 혼자서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획산등 관련 개인·법인·단체등과 합하여 총출연재산·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9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금융회사로서는 ( i ) 법인 고객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징구받아, ( ii ) 일부 상위 대주주 등(이하 “**상위 대주주**”)에 대한 요주의 인물 필터링(Watch-list Filtering) 결과 대량무기획산등 관련 개인·법인·단체등으로 확인되는 주주의 지분을 합산하여, 고객이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식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쟁점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① 요주의 인물 필터링 대상 상위 대주주가 몇 명인지(예: 상위 5명)
  - ② 상위 대주주가 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필터링 되지 않았더라도 OFAC 50% Rule FAQ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간접 소유 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간접 소유 법인에 대해서도 테러자금금지법이 적용되어 지분을 합산해야 하는지
- \* (OFAC 50% Rule FAQ 401, 예시 1) 제재 대상자 X가 기업 A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A는 기업 B의 지분 50%를 소유하는 경우 기업 B는 제재 대상 기업으로 간주
- ③ 상위 대주주에 대한 요주의 인물 필터링 솔루션이 오작동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 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법인에 대한 테러자금금지법상 추가 확인 필요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i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 ii ) 특정 공공단체, ( iii ) 다른 금융회사등,

(iv)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법인 또는 단체 고객에 대해서는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

한편, FATF 권고사항 10의 주석서 2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은 경우' 거래관계의 목적 및 의도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정보를 수집하거나 특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거래 유형 또는 거래관계로부터 목적 및 성격을 추론하는 등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 법인 또는 단체 고객에 대하여 법인 소유자 및 실질 지배자 체크리스트 징구 등 테러자금금지법상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i) 특정금융정보법상 실제소유자 면제 대상 고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객이 저위험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예: 고위험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ii) 해외 공공기관 같이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이 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제129쪽) 금융회사의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테러자금금지법상 추가 확인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지 등 향후 실무적으로 정리될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시사점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는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금·영수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고(테러자금금지법 제5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의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금융회사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조항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7항),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테러자금금지법 제7조 제1항),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미지정거래제한대상자를 식별하는 절차를 면밀하게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테러자금금지법 개정과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도 함께 개정되어 고객유형 평가(업무규정 제30조 제3항 제6호), 요주의 인물 대상(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업무규정 제74조) 등에 관한 규정이 테러금금지법과 일치하게 되었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미지정거래제한대상자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